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 24. 김소희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 2024. 1. 3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 7.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5. 9. 17.)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2차 전체회의(2025. 9.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소희의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은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사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 최근 일부 충전시설 사업자 등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무공해차 사용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

환경부는 민원센터 운영, 충전시설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왔으나,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충전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기존의 전산망에 충전시설의 설치정보 및 이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② 환경부장관은 기존의 전산망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운영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충전시설의 통합 운

1) 행정안전부에서는 환경부 소속기관으로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환경부 직제(대통령령) 규정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고, 한국환경공단과 같이 별도

영 및 고장 여부, 이용 상태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사용자 불편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법인을 단순 전담기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문구를 ‘지정 운영’이 아닌 ‘지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8. 기타사항

없음